2015년도

종 합 현 황

(2015. 3. 31 기준)

서울시설공단 | 안전관리처

안전관리처

Ⅰ 사 업 개 요

☐ 연　　혁

○ 2014. 11. 28 : 안전혁신단(T/F)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 2014. 12. 02 : 안전혁신단(T/F) 구성
○ 2014. 12. 26 : 안전관리처 직제 승인
○ 2015. 01. 01 : 안전관리처 직제 공포 시행

☐ 미션 · 비전

미　션	차원이 다른 안전한 서울 구현
비　전	시민 안전 선진화를 주도하는 안전혁신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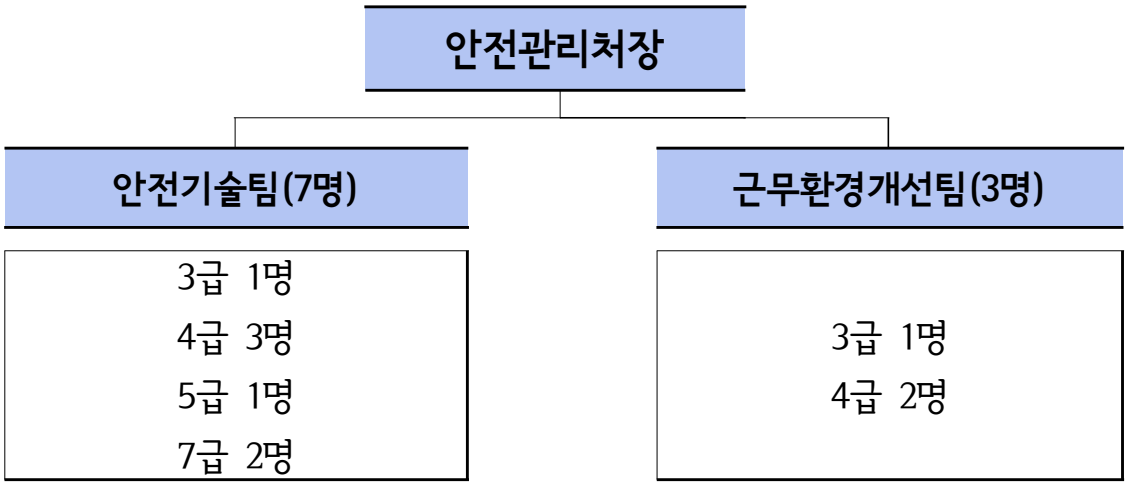
☐ 주요사업

구 분	핵 심 사 업 과 제	사 업 목 표
시민 안전	1. 예방적 재난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인적자원 구축(핵심과제) 2.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핵심과제)(내부협업) 3. 전직원이 참여하는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상생 협력	4. “아차사고” 사례발굴을 통한 산업재해 사전 예방 강화 5. 마음 건강한 일터 구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특화	
가치 혁신	6. 재난관리 평가제도 도입 및 매뉴얼 고도화(핵심과제)	
효율 경영	7. LCC분석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예측시스템 도입(핵심과제) 8. 직원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핵심과제)(내부협업)	

Ⅱ 일 반 현 황

1 조 직

☐ 조 직 도



☐ 주요업무

구 분	분 장 업 무	비고
안전 기술팀	- 재난 · 안전관리업무 총괄 -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 공사 · 용역 등에 대한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 설계변경심의 업무 총괄 - 건설 기술 정보의 수집 · 보급 업무 등	
근무환경 개선팀	- 근무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장별 근무환경 개선 업무 -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 직원 건강검진 증진 및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인 원

구분	계	일 반 직														
		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일반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정원	12	12	1	2	9	-	1	1	1	-	3	1	4	-	-	-	1
현원	11	11	1	1	9	-	1	1	1	-	5	-	1	-	-	-	2
증감	△1	△1	-	△1	-	-	-	-	-	-	2	△1	△3	-	-	-	1

Ⅲ 주요(시설) 운영 · 관리현황

1 기술 · 계약심사업무

《 시행근거 》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설치 원가심사 업무 시행(2003.2.15~)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정(2005.1.15)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436호 일부개정(2005.4.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2006.1.1)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501호 일부개정(2006.7.19)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행 공사·용역 심사대상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2014.12.19)

□ 연 혁

○ 2007. 12. 13 : 기술심사팀 신설·운영계획 (이사장방침 제464호)
○ 2008. 12. 24 : 기술·계약 심사반(T/F) 설치·운영 계획 (이사장 방침 제557호)
○ 2008. 01. 23 : 기술심사업무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사장방침 제36호)
○ 2013. 07. 13 : 기술안전팀(TF) 설치 및 운영계획 (이사장방침 제80호)
○ 2014. 02. 05 : 2015년도 기술계약심사업무 종합운영계획 수립 (안전관리처-524호)

□ 주요업무

○ 공사 · 용역 · 구매설치에 대한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설계변경 심의
- 공사 · 용역계획 수립의 합리성 및 과업 지시의 적정성
- 관련 법규,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부합여부 등 설계 심의
- 원가계산(일위대가, 요율, 자재비, 노무비, 물량 산출)의 적정성 심의
- 공사 기간, 자재 수급의 적정성 및 시공상 안전 관리 등
○ 건설 신기술 등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 보급 업무 등 기타 업무
○ 발주 부서 기술지원(설계, 현장점검 등) 및 실무 교육 시행

☐ 심의대상

○ 기술심의

※ 기준금액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

구 분		금 액	제외대상
공 사	일반 건설공사	5천만원 이상 ~ 50억원 미만	- 매년 반복 시행 공사(연간 단가공사 등), 일반·학술용역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또는 정보화기획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의' 받은 사업 - 기타 기술심의가 불필요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업
	전기, 통신, 소방, 전문공사 등	5천만원 이상 ~ 10억원 미만	
용 역	토목, 건축 등	3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전기, 통신, 소방, 전산, 전문공사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구 매	공사 성격이 강한 경우	3천만원 이상 ~	

○ 계약심사

※ 기준금액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

구 분		금 액	제외대상
공 사	토목, 건축공사(일반,전문)	1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긴급 등의 사유에 대한 소관 본부장 승인을 득한 경우 - 조달청에 계약 의뢰 및 의무 조달발주 대상 - 예정가격을 미리작성하지 않는 경우(계약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 등)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또는 정보화기획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의' 받은 사업
	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	1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용 역	기술용역	1천만원 이하 ~ 2억원 미만	
	전산용역	1천만원 이상 (유지보수사업)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신규사업)	
	학술, 일반용역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구 매	구매설치 (단순구매 제외)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설계변경심의

구 분	대 상	제외대상	심의 방법	요청시기
설계변경 심 의	· 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중 10% 이상 변경시	· 각종 공사(연간단가, 단일공사)· 용역 시행 중 단순 물량 증감사항 및 신규 공종이 없는 경우 등 심의 실효성이 없어 사전에 협의한 경우 · 긴급 등의 사유에 대한 소관 본부장 승인을 득한 경우 · 서울시 설계변경 심의대상	· 일상적인 설계변경 심의 경우 검임심사자 서면심사 · 공법변경 등 기술적 판단 필요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통보 희망일 10일전

☐ 연도별 기술계약심사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기술심의	계약심사	설계변경	비고
2012년	심사건수	201	26	127	48	
	절 감 액	612	-	413(△4.3%)	199(△0.7%)	
	요청금액	44,744	6,352	9,455	28,937	
	심사결과	44,132	6,352	9,042	28,738	
	지적건수	1,182	293	572	317	
2013년	심사건수	192	21	143	28	
	절 감 액	500	-	322(△3.3%)	178(△1.6%)	
	요청금액	25,138	4,009	9,856	11,273	
	심사결과	24,638	4,009	9,534	11,095	
	지적건수	951	201	518	232	
2014년	심사건수	214	28	157	29	
	절 감 액	450	-	412(△3.1%)	38(△0.3%)	
	요청금액	31,383	6,920	13,195	11,268	
	심사결과	30,933	6,920	12,783	11,230	
	지적건수	1,359	268	845	246	
2015년 (3.31자 기준)	심사건수	51	5	45	1	
	절 감 액	104	-	103(△2.8%)	1	
	요청금액	5,266	1,467	3,662	137	
	심사결과	5,162	1,467	3,559	136	
	지적건수	345	76	260	9	

2 설계 경제성 심사업무(VE)

《 시행근거 》

◆ 시설물 중·장기 유지관리계획 보고(이사장 방침 제 181호)(2013.12.11)
◆ 시설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사장방침 제55호)(2014.2.27)
◆ 2015년도 가치분석(VE) 운영계획(안전관리처-487호)(2015.2.4)

☐ 주요업무

○ 공사의 계획 · 조사 · 설계의 타당성 등 경제성 분석
○ 부서별 시설물 유지 · 보수 계획에 대한 적정성 및 사업의 경제성 검토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 · 공사 시방내용의 적정성
○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법, 가치증대 방안 모색
○ 주요 자재 내구연한 확인 등

☐ 설계 경제성 심사 대상

※ 기준금액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

○ 심사 요청 시기 : 설계 진행 50~80%(기술심의 전단계) 가치분석 실시
○ 토목, 건축공사 : 5억원 이상
○ 전문공사(전기, 설비, 조경, 통신) : 3억원 이상

※ 설계 경제성 심사 제외대상 : 매년 반복시행되는 공사(차수별, 연간단가 등)

☐ 설계 경제성 심사 실적

○ 시설 가치향상 : 32.2%
○ 예산절감 : 7,145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발주공사	중장기계획	비고
2014년	심사건수	18	9	9	
	절 감 액	7,145	140	7,005(6.6%)	
	요청금액	36,199	5,055	31,144	
	심사결과	29,054	4,915	24,139	
	기능향상	15.8	15.8%	-	
	가치향상	32.2	32.2%	-	

3 재난관리 업무

《 시 행 근 거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령 제29조(시·도 안전관리계획)
- ◆ 이사장 방침 제19호(2015년도 재난안전관리계획)(2015.1.27)

☐ 주요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공단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5조)

- 재난관리대책 수립 : 자연 재난, 사회 재난
- 안전관리대책 수립 : 해빙기, 수방, 제설,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공단 주요 시설물 현황

개소 \ 부서		누계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관리처	상가운영처	추모시설운영처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도로시설처	도로관리처	교통정보처	도로환경처	교통시설운영처	공동구관리처	총무처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합 계		385	63	8	3	26	5	2	1	140	55	1	1	73	6	1
법적	시특법 시설물	141	2			12		1		104	15			6		1
	재난관리시설	74	2	8		14	1	1		29	13			6		
	절개지	27									27					
일반시설물		143	59		3		4		1	7		1	1	61	6	

○ 법정관리 대상 시설물 : 242개소 (2014년 대비 135개소 증가)

구 분	시설명 및 수량	비 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41개소)** (1종 29개소, 2종 112개소)	■ 소공지하상가 등 12개소 ■ 청사 건축물 1개소 ■ 옹벽 14개소 / 절개지 1개소 / 도로시설 104개소 ■ 공영주차장 6개소 / 추모공원 헌화터널 1개소 ■ 월드컵 주경기장 1개소 / **장충체육관 1개소**	A급 9개 B급 127개 C급 4개 **D급 1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 시설물 **(74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 지하도상가 14개소 ■ 옹벽 13개소 ■ 어린이대공원 시설물 8개소 ■ 시립승화원 1개소, 서울추모공원 1개소 ■ 월드컵 보조경기장 1개소, 부속교량 1개소 ■ 공영주차장 등 6개소 ■ 도로시설물 29개 (고가, 교량 등)	A급 14개 B급 58개 C급 2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상시설물 **(27개소)** (급경사 절개지)	■ 도로관리처 27개소	B급 27개

※ D 등급 (장충체육관) : 市 와 위수탁 계약 체결완료(2014. 12. 5) 되었으며, D 등급은 개보수전 등급으로 2015년 정밀안전진단 용역후 등급 조정 예정

○ 기타 일반시설물 : 143개소

서울어린이대공원	교통시설운영처	도로시설처	공동구관리처	서울시립승화원
59	61	7	6	4
■ 군자정외 58개 시설물	■ 공영주차장(31) ■ 공영차고지(11) ■ 매입차고지(17) ■ 혼잡통행료관리소(2)	■ 교량(6) ■ 가로등	■ 여의도, 상암, 개포, 가락, 목동, 상계공동구	■ 벽제리 추모의집 ■ 왕릉식 추모의집 ■ 건물식 추모의집 ■ 망우리 추모공원
교통정보처	**청계천관리처**	**도로환경처**	**장애인콜택시**	
1	3	1	1	
■ 교통정보시스템	■ 청개천 하천시설 ■ 유지용수관리소 ■ 판자집 테마촌	■ 사무실 건물	■ 창동차고지	

☐ 점검현황

○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구 분	점검종류 · 대상	실시시기	점검내용	실시자 자격
안 전 점 검	정기점검(1,2종)	· 1회 이상 / 6월	주요부위 간단 육안검사	초급기술자 수준
	정밀점검(1,2종)	· 시설물1회이상/1~3년 · 건축물1회이상/2~4년	시설물 전체부위 면밀한 육안검사 및 간단한 기구에 의한 측정	고급기술자 수준
	긴급점검(1,2종)	· 관리주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정 밀 안 전 진 단	정밀안전진단 (1종)	· 완공후 10년경과 된 때부터 1년 이내, 그 후 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이상	정밀한 육안검사와 다양한 시험, 측정	특급기술자 수준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점검종류	대상	시기	비고
정기안전점검	· A, B, C 등급	반기별 1회 이상	
	· D 등급	월 1회 이상	
	· E 등급	월 2회 이상	
수시안전점검	필요시 시행		

※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급경사절개지에 대한 안전점검

구 분	대상	시기	비고
안전점검	· 급경사지	년 1회 이상	
년 1회 이상 점검 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생략 가능			

※ 급경사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연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 인공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가 20m 이상

○ 자체점검

구 분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매분기	■ 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동절기	안전관리처
특별점검	매분기 / 필요시	■ 시민이용시설 간부직원 교차점검 ■ 테마(집중) 점검 - 상황별, 시기별 적정주제 선정	각부서 팀장급 이상 안전관리처
상시점검	연 중	■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사장 중점점검 ■ 시설물(전기,소방등)의 내외부 진단(점검,훈련) 참관 및 점검	안전관리처
긴급점검	긴급시	■ 긴급사태(재난 등) 발생시 점검	안전관리처

☐ 점검계획 및 실적

○ 점검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기	해빙기		━	━									
	풍수해					━	━						
	가을철								━	━			
	동절기											━	━
특별	간부직원 교차점검		━	━		━	━		━	━		━	━
	테마(집중) 점검	━	━	━	━	━	━	━	━	━	━	━	━
상시	다중이용시설 및 공사장	━	━	━	━	━	━	━	━	━	━	━	━
	내,외부진단 (점검,훈련)	━	━	━	━	━	━	━	━	━	━	━	━

○ 전년도(2014년도) 점검실적

연번	점 검 명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비 고
합 계		585	585	100%	
1	설날대비 특별점검	42	42	100%	※ 예산 수반으로 즉시 조치가 불가한 사항의 경우, 조치 이행계획 수립여부 확인
2	해빙기 안전점검	109	109	100%	
3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110	110	100%	
4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공단 주요사업장 특별안전점검	34	34	100%	
5	재난안전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특별안전점검	49	49	100%	
6	지하도상가 전기,소방시설 긴급 특별안전점검	77	77	100%	
7	태풍(강풍,호우)대비 특별안전점검	25	25	100%	
8	공단 승강장치 특별안전점검	27	27	100%	
9	가을철 안전점검	54	54	100%	
10	동절기 안전점검	58	58	100%	

○ 2015년도 점검실적(특별점검)

연번	점 검 명	점검일시	적출건수	비 고
합 계		-	103	
1	정릉터널 관광버스 전도사고 관련 특별점검	1.6	-	
2	장충체육관 개장 전 특별점검	1.13 ~ 14	95	
3	어린이 대공원 방역실태 특별점검	1.22	-	
4	어린이 대공원 놀이시설 특별점검	1.30	8	
5	장지동 공영차고지 차량 화재사고 현장 특별점검	2. 3		
6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 특별안전점검	2.25		
7	한강진 공영주차장 현장 특별점검	2.28		
8	청계천 마장2교 하류 억새 화재관련 특별점검	3.17		
9	신촌 현대백화점 인근 흡입준설차량 전도사고 특별점검	3.29		

▢ 공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

《 시 행 근 거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 운영부서 : 안전관리처
○ 기　　능 :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및 신속한 재난상황 지휘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등
○ 운영시기 : 재난 1,2,3등급 규모의 자연, 사회 재난 발생시
기타 공단사업장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재난 발생시
○ 운영판단 : 이사장
○ 재난 상황전파 및 수습절차
- 재난 상황 접수, 재난발생 목격 · 신고
- 재난 상황 전파, 비상연락(보고)
- 긴급구조 · 응급조치 · 요청
- 공단재대본 상황실 설치 · 운영
- 수습 및 복구
-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시행 / 상황종료
○ 적용대상 재난 유형

구 분	1급 재난	2급 재난	3급 재난
재난 유형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어야 할 정도의 대형재난 또는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공단에서 발생되거나, 재난발생예고 발령시	市 차원의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수습복구 해야하는 재난 발생시 또는 재난발생 예고 발령시	공단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사장)이 공단차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대비·수습·복구 명령시 * 인명사고, 물적피해, 다수의 시민불편 예상시 등 (단순 교통사고 제외)

※ 과거사례 : 시립묘지 산사태, 대공원 놀이동산 사고, 종각지하상가 폐가스 누출 등

○ 수방 및 제설 단계별 상황근무 기준

단 계	상황 기준		상 황 근 무		행 동 요 령
			상 황 본 부	복구반 (서울시 소집기준)	
보강 단계	수방	강우예보 (일강수량 30mm이상 강우 예보시)	본사 당직자 업무 대행 (야간, 공휴일) 평일주간 : 현장관리 일부부서만 근무 (안전관리처 : 문서수신, 발송등 행정처리)	부서별 기준적용	-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근무체계 가동 - 수방,제설 가용인력, 장비점검 - 살포기 장착 및 염수 주입(제설) - 제설차량 및 장비 작업대기(제설)
	제설	강설예보 (강설확률 30%이상, 기온2℃미만)			
1단계 (주의)	수방	호우주의보 - 6시간 70mm이상 - 12시간 110mm이상 한강대교 수위 - 4.5m 도달시 태풍주의보 - 순간풍속 20m/s	근 무 : 2명 (경영지원본부 소속 직원) ○총괄조정관 1 (팀장) ○반원 1 (4급이하)	-	- 총괄조정관(팀장) 지휘 - 기상예보접수 전파 및 보고 - 비상연락망/연동망점검 - 현장 상황파악 유지 - 위험/취약지역 사전점검 - 제설재 상차, 작업실시(제설)
	제설	강설예보 (적설량 3㎝ 내외 예보시)			
2단계 (경계)	수방	호우경보 - 6시간 110mm이상 - 12시간 180mm이상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태풍경보 - 순간풍속 20m/s - 총강우량 200mm이상	근 무 : 3명 (경영지원본부 소속 직원) ○총괄조정관 1 (경영지원본부장, 실처장) ○반장 1 (팀장) ○반원 1 (4급이하)	현원 1/4	- 총괄조정관(처장) 지휘 - 재해대책 각 반장 현장소장 비상소집 - 기동순찰반 운영(현장사업소) - 본부단위별 수방,제설작업 등 상황대처 실시 - 제설삽날 장착, 밀어내기 작업(제설)
	제설	대설주의보 (적설량 5㎝ 이상 예보시)			
3단계 (비상)	수방	호수경보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이재민다수발생	근 무 : 17명 ○본부장 1 (이사장) ○부 본부장 5 (각 본부장) ○총괄조정관 8 (경영지원본부 실처장 4, 본부별 부서장 4) ○반장 1 (경영지원본부 소속 팀장급) ○반원 2 (경영지원본부 소속 4급, 이하 각 1)	현원 1/2 필요시 전원근무	- 기관장 정위치 - 재해대책 요원 전원근무 - 본사 직원 현장지원(필요시) - 3단계 지속시 지원반 추가(필요시) - 본부단위별 수방,제설작업 등 상황대처 실시 - 제설삽날 밀어내기 작업 및 가용장비 총동원(제설)
	제설	대설경보 (적설량 20㎝ 이상 예보시)			

4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현황

《 시 행 근 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고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업무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안전·보건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주요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위험평평가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원인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고용노동부령)

▶ 보건관리자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주요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보좌 및 조언·지도
  -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위험성평가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점검
  - 산업재해 발생원인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 2015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안전관리처-400('15.1.29)호)

▢ 산업안전·보건관련 선임자(법적) 현황

《 법 적 기 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부동산 및 임대업)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전담 안관리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부동산)에는 보건관리자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

구 분	성 명	선임년월일	부서명	직위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오 성 규	2013.07.05	공 단	이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등)
안전관리자	임 영 성	2009.06.15	안전관리처	과장	건설안전기사
	김 재 호	2013.04.03	안전관리처	대리	건설안전기사
보건관리자	남 현 수	2013.07.17	안전관리처	과장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김학원:노동조합 산업안전국장) : 고용노동부 위촉('14.9.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분기별)

《 시 행 근 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 제7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심의 의결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제1호~7호)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중대재해시)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예방 안전점검(분기별)

《 시 행 근 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관리자 직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보건관리자 직무 등)

○ 점검개요

- 점 검 자 : 안전 · 보건관리자 ※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국장 합동점검
- 주 기 : 분기별(또는 필요시) / - 점검대상 : 전 현장사업장
- 점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위주

■ 작업장, 통로, 보호구,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및 자료 비치여부 등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여부 등 점검 등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여부 등 점검 등

○ 전년도(2014년도) 점검실적

구분	주요점검사항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비 고
합 계		304	304	100%	
1/4분기	해빙기로 인한 현장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86	86	100%	
2/4분기	유해 · 위험 · 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 및 안전검사여부 등	96	96	100%	
3/4분기	현장사업장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	60	60	100%	
4/4분기	기계 · 전기설비 · 시설물 등 산업안전 · 보건 기준 준수 및 위험여부	62	62	100%	

5 건강검진 현황

《 시 행 근 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2(건강검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 단체협약 제72조(건강진단) 및 복지후생규정 제4조(건강진단)

□ 건강검진 종류 및 대상

○ 일반검진

- **대상자** : 전직원(임원, 일반직, 서비스직, 기간직, 공무직)

※ 준공무직, 일용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무료 기본검진 별도시행

- **기본검진(21개)**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X-선촬영, 혈액검사, 요검사 등
- **추가검진(69~120개)** : 위·대장내시경 등 41개 장비검사(MRI, CT 등 검진기관별 상이)

○ 특수검진

- **대 상** : 22:00~익일06:00까지의 야간작업 근무자

·월 평균 4회 이상 근무자(6개월간 누적횟수 24회 이상)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자(6개월간 누적시간 360시간 이상)

- **대상자** : 전직원(일반직, 서비스직, 기간직, 공무직, 준공무직, 일용직)
- **1차검진(11개)** : 문진(불면증 등) 및 심혈관계(혈액검사, 혈압 등) 검사 등
- **2차검진(11개)** : 심층면담(불면증 등) 및 심혈관계(혈액검사, 혈압 등) 검사 등 전문의 선택검사 실시 ※1차검진후 이상소견시 2차검진 진행
- **검진시기** : 배치전, 배치후 6개월, 12개월 주기

○ 폐CT검사

- **대 상** : 미세먼지 사업장(도로 및 지하시설, 화장로) 근무자

※ 상가운영처 등 10개 부서

◆ 검진기관 선정 방법 : 직원 공개설명회 및 현장실사를 통한 선정

제안 접수	- 대 상 : 참여 희망 기관(기존 검진기관 및 신규 검진기관) - 방 법 : 공문접수 · 참여기관별 제안 검진항목, 기관별 특장점 및 할인수가 등
직원 공개설명회 (1차 평가)	- 대 상 : 각 부서 직원 2명씩 참여 - 방 법 : 제안 참여기관별 제안내용 등 발표(PPT) 및 설명회 참여직원 각 기관별 평가 ※ 평점 60점 반영
현장 실사평가 (2차 평가)	- 평가위원 : 4명(노 · 사 각 2명) · 노동조합(2명) : 산업안전국장, 후생복지국장(여성) · 사 측(2명) : 보건관리자(안전관리처), 복리후생담당(인사처) - 방 법 : 제안 참여기관별 현장실사 ※ 평점 40점 반영 · 시설환경(접근성, 청결, 주차장 등), 검사장비의 적절성 · 특수건강검진 기관여부, 검체 검사방식 및 기타 사후관리 등
검진기관 최종선정	- 방 법 : 직원 공개설명회 및 현장실사 평가 합산 - 최종 선정 : 최종 합산 70점 이상인 검진기관 대상으로 점수 순으로 선정(12개 기관)

☐ 2012년 ~ 2015년 건강검진 현황

연도	총 소요예산 (천원)	일반검진		특수검진		폐CT		검진기관 수(개)		
		대상 인원 (명)	비용 (천원)	대상 인원 (명)	비용 (천원)	대상 인원 (명)	비용 (천원)	계	일반 검진	일반검진 특수검진 동시
2012	549,485	1,773	503,737	-	-	435	45,748	5	5	-
2013	584,117	1,868	529,982	-	-	542	54,135	7	7	-
2014	681,248	1,972	599,593	878	32,250	505	49,405	12	7	5
2015	778,725	2,210	672,650	788	19,435	722	86,640	12	3	9

▸ **검진비용** : **일반검진**(35세이상 31만원, 35세이하 26만원)
특수검진(일반+특검병행시 : 16,710원 / 순수 특검 : 38,250원)
폐CT(12만원)

※ 2015년 현황은 예상 인원 및 금액임

6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현황

《 시 행 근 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등의 의무)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전사적 근무환경 개선 추진 (2014년~)

○ 관련근거 : 근무환경개선팀(TF)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이사장 방침 제176호, '13.12.6)

○ 추진경과

- 전사적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2014.1.20 ~ 2.21)
  - 본사 및 사업소 등 67개소 현장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683명)
- 전사적 근무환경 최적화 추진계획 수립(이사장방침 제93호, 2014.4.3)
  - 근무환경 개선 기준마련(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 현장실태조사 및 설문결과 반영

사무공간	사무집기,내부마감, 조도, 공기질 및 소음, 온도, 근무면적
휴게공간	설치여부, 구비시설(휴게용 집기, 냉난방, 개인사물함 등)
편의시설	샤워시설, 세탁기, 냉장고, 음수용품 등

  - 개선과제 발굴 추진 : 14개 부서 총 43개 과제
    - ▸ 단기과제(2014년) 28개 완료, 중장기과제(2015년 ~) 15개 진행 중

○ 2014년 주요 개선내용(완료과제)

구 분	추 진 내 용
상가운영처	방재실 직원용 휴게실 조성 (영등포)
장애인콜택시	업무용 인터넷 전화 품질개선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이동지원센터)
	상담직원용 안마의자 설치(이동지원센터)
공사감독처	적정 근무면적을 위해 층별 부서, 인력 재배치 및 사무집기 교체, 휴게실 조성
공동구관리처	관리사무실 노후 사무집기(책상, 의자) 교체(개포공동구)
	근무직원에 맞게 적정 PC지급 (개포공동구)
교통시설	관리사무실 직원용 휴게실조성(혼잡, 서부주차)
	근무직원에 대한 근무복 통일 등 일반시민과 구분 가능토록 개선(주차장)
도로환경	식수용 정수시설 개선 → 대용량 정수기 2대 추가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PC추가 제공(청소, 녹지반, 현장기지)
교통정보	항온항습기 소음개선(상황실) →1일 2시간 가동 정지로 소음 저감

구 분	추 진 내 용
도로관리	직원 샤워시설(온수기) 개선(강남도로기전)
추모시설	관리사무실 직원용 휴게실 조성 (승화원 및 묘지)
	장례기사 작업복 지급 물량 확대
	화장로 주변 분진 및 악취 해결을 위한 배기시설 개선 (승화원)
	전기실 주변 시설(정화조)의 악취 해결을 위한 배기시설 개선 (승화원)
	접수실 내 직원용 간이세면대 설치 (승화원)
	건물내부 마감재(바닥, 벽지등) 및 사무집기 개선(공원묘지관리소)
	직원 식당 겸 조리실 신규 설치 및 조리시설 개선(공원묘지관리소)
	장례기사 방진마스크 지급 물량 개선

☐ 청소·경비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 **관련근거 :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이사장방침 제33호, '14.27)

○ **추진경과**

- 청소·경비직원 근무환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 수렴(2014. 2~4월)
  · 대 상 : 상가운영처, 체육시설운영처, 어린이대공원, 추모시설, 청계천, 총무처
- 청소·경비직원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이사장방침 제98호, 2014.4.14)
  · 공단 근무여건 및 사업특성을 고려한 표준 개선기준(안) 마련

휴게공간	설치여부, 교체 및 정비, 조도, 온도, 공기질 및 소음
기본비품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개인사물함
편의시설	샤워시설, 세탁기, 냉장고, 음수용품 등 구비 및 타직원과 구분

  · 개선과제 발굴 추진 : 6개 부서 총 199개소

○ **2014년 주요 개선내용**

구 분	건 수	주 요 내 용
계	199개소	199개소 개선 완료(소요예산 : 182백만원)
신규 및 재조성	17개소	공동사용(청소 및 경비)휴게실 분리 및 공간 마련
노후마감교체	17개소	벽지 도색, 장판교체, 평상 설치 등
조도개선	66개소	조명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
노후비품교체	72개소 (냉장고 등 254개)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개인사물함 등 노후비품 교체 및 신규 지급
난방개선	27개소	전기장판을 바닥 전기온돌으로 교체 설치

☐ 2015년 추진계획

현장 실태조사	○ **전체 현장실태 조사(1 ~ 2월)** - 대 상 : 본사 및 현장 사업소 등 120여개소 ※ 2014년 67개소 방문조사 - 내 용 : 사무공간,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전반사항 조사	안전관리처
과제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 **주요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계획 수립(3월)** - 현장실태 조사를 토대로 각 부서 및 현장별 개선과제 발굴 ▸노후 사무집기 교체, 내부마감 정비, 공기질 개선 ▸냉난방 시설, 개인사물함, 샤워시설, 냉장고 등 편의 및 휴게비품 마련 - 개선과제 추진계획 수립 ▸부서별 추진과제 설정 및 과제관리 계획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추진	○ **부서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실행계획 마련(3월)** - 개선과제별 부서검토 및 세부시행계획 마련 ※ 단기, 중장기 과제 구분 ○ **부서별 개선과제 추진(3월 ~ 12월)** - 저예산 및 단기 과제 : 즉시 또는 연내추진 - 예산 과다 등 중장기 추진 판단과제 : 연차적 시행	해당부서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 **부서별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분기 및 수시)** - 과제 추진일정에 따른 진행사항 실적 관리 (완료 / 정상추진 / 부진) - 개선완료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확인	안전관리처
환 류	○ **근무환경개선 결과 분석 및 환류(12월)**	안전관리처 해당부서

☐ 2015년 근무환경개선 추진현황

○ 관련근거 : 이사장지시사항 제282번('14.12.30, 핵심가치토론회시)

『 지시내용 : 근무환경 개선 지속적 추진 』

○ 추진경과

- 전사적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2015.1.9 ~ 2.6)
  - ▸ 중점 사항 : 소수직원 및 소규모 현장 집중 점검(개별 주차장 등 138개소)
- 2015년 근무환경 개선 추진계획 수립(이사장방침 제45호, 2015.3.5)
  - ▸ 신규 발굴과제 : 12개 부서, 326건
    - · 사무공간 및 비품 : 136건

사무비품		내부마감			공기질	냉난방	소 음	공간분리
노후	부족	벽, 천장도색	바닥장판	조 도				(사무/휴게)
25	38	5	7	11	15	31	-	4

· 휴게공간 및 비품 : 116건

공간 구분	내부마감				휴게비품 및 집기				
	벽도색	바닥장판	냉난방	조도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렌지	전기포트	개인사물함
5	4	13	3	2	23	4	18	2	42

· 편의시설 및 비품 : 74건

샤워시설		편의시설 노후 및 부족			업무용 PC, TV	기 타
노후	부재	세탁기	창호 단열,차양	정수기		
13	2	2	8	26	3	20

※ 부서별 개선과제

부 서	개 선 내 용	발굴건수(건)
체육시설운영처	조경사무실 조도개선 등	12
서울어린이대공원	청소(남)휴게실 휴게비품 개선 등	39
청계천관리처	생태교실 편의시설 개선 등	6
추모시설운영처	사무실 내 편의시설 개선 등	23
상가운영처	을지로상가 방재실 재배치 등	11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운전원대기실 휴게비품 개선 등	99
도로관리처	직영반 사무실 개선 등	2
도로시설처	강남도로기전 사무실 시설 개선 등	9
도로환경처	청담기지 녹지반 사무집기 개선 등	6
교통시설운영처	천호역 노후 사무집기 개선 등	94
공동구관리처	가락공동구 휴게비품 개선 등	4
인사처, 총무처	구내식당 조리실 개선 등	18

7 직원 정신건강 개선 추진 현황

《 시 행 근 거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위해 근로조건 개선, 복지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함

□ 추진경과

○ 관련근거 : 근무환경개선팀(TF)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이사장 방침 제176호, '13.12.6)

○ 전직원 직무스트레스 조사(2014.2.14~3.5)

-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증상진단 등 온라인조사(1,082명 참여)

○ 직원 정신건강 개선 추진계획 수립(이사장방침 제98호, 2014.4.14)

□ 2014년 주요추진내용

○ 총 괄

추진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휴 프로그램 등 10개 프로그램 26회 운영, 전자결재 게시판 내 행복한 일터 운영, 사내방송 16회 등
참 여 인 원	직무스트레스 조사 참여(2회) 1,750명, 각종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 1,031명

○ 세부추진사항

측 정	전직원 직무스트레스 조사 2회(2/9월) : 온라인 조사, 1,750명 참여 - 고위험군 : 상반기(1차) 31.3%, 하반기(2차) 28.1%
상 담	오프라인 스트레스 검사 및 건강상담(성동구 건강증진센터) (4.29~30) : 85명 전문기관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추진(5~12월) : 직장, 개인, 가정문제 등 대면, 유선상담(125건/31명) 소규모 집단상담 프로그램(2회, 60명) : 감정노동 및 관계갈등 해소(혼잡통행료 징수원, 공사감독 대상)
치 유	테마가 있는 힐링프로그램(5회, 72명) : 미술치료, 명상호흡법 등 프로그램 스트레스관리 休프로그램(3회, 80명) : 숲속체험, 명상, 삼림욕 등 1박 2일 및 2박 3일 추진 인제대와 함께하는 숲치유(3회, 23명) : 인제대 백병원과 연계한 휴양림 내 체험, 명상, 체조 등 몸맘 건강프로그램(6회, 555명) :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예방 간부 마음코칭 교육(6.26, 93명) : 조직 내 관계갈등 완화 및 스트레스 관리 Fun 힐링 감정코칭(7.1, 32명) : 인재개발원 열공데이 협업 추진
문 화	사내 힐링마당 운영(5~12월) : 행복한 일터(게시판) 운영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법 등 정보 공유

☐ 2015년 정신건강 개선 ※ 2015년 직원 정신건강 개선계획 수립('15.2.3)

기본방향

○ 정신건강 힐링프로그램 특화·활성화로 직원 건강도모 및 직원상호간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이해·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

- 사업장특성, 업무내용, 연령별, 계층별, 성별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 休(휴)프로그램 테마 확대운영을 통한 심리안정 및 업무몰입 제고

- 직원 및 간부 → 관계갈등 해소 / 직원 및 가족 → 가족친화

추진계획

○ 각종 스트레스 관리 힐링프로그램 특화·활성화

직무스트레스 조사 (연 2회)	주기적 온라인 직무스트레스 조사시행으로 개별 스트레스 수준 진단 기회제공 및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인 변화관리
전문기관 심리상담서비스 (연간)	전문 심리상담사와 1:1 대면, 이메일, 전화 상담 기회 제공 현장 교대근무자 등을 위한 출장 심리상담
오프라인 스트레스검사 및 건강상담서비스	성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협조 비예산 프로그램 - 스트레스 측정, 금연, 금주 관련 전문 상담
1day 힐링프로그램	사업장 특성(연령, 계층, 성별) 등에 따라 회차별 테마 선정 미술치료, 명상호흡법, 웃음치료 등 1day 소그룹 힐링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관리특강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스트레스관리법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
간부직원 대화 스킬 강화 교육	핵심가치토론회 등 직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사내 힐링마당 운영	사내 게시판 및 메일을 이용한 스트레스관리, 명상호흡법 등 전문정보 게시·공유
정신건강 전문실무자 교육과정 수료	근무환경개선팀 실무자의 전문 교육과정 이수 -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무기관 실무과정

○ 스트레스 관리 휴(休) 프로그램 테마 확대 운영

- 대 상 : 직원 및 가족 등(지원자)
- 주요내용 : 연2회(상·하반기), 1박2일 일정으로 숲 등 자연체험·치유
  ·일반직원+간부직원 → 관계갈등 해소 / 직원+가족 → 가족친화

※별도 인제대 스트레스연구소 숲치유 캠프 참여(연 2회)

추진현황

○ **2015년 상반기 직무스트레스 조사 실시**

- 대　　상 : 전 임직원　　※ 휴직자 등 제외
- 기　　간 : 2015. 3. 23 ~ 4. 6 (15일간)
- 내　　용 :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스트레스 반응 등 총 74문항
- 조사방법 : 웹 설문조사(개인 PC 및 휴대폰)

○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실시**

- 대　　상 : 전 임직원
- 기　　간 : 2015. 4. 1 ~ 12. 31(8개월간)
- 내　　용 : 직장, 개인, 가정 내 직면한 다양한 문제 및 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개선 상담
- 진행절차 : 개별 신청 후 1대1 대면상담 또는 전화, 이메일 상담

Ⅳ 201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15.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추 진 현 황 및 향 후 계 획
계		270	
예방적 재난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인적자원 구축'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pool 구성으로 안전점검 및 계획 고도화를 통해 복합적이고 중대한 재난의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	-	ㅇ 추진현황 : 30% 진행 ㅇ 추진내용 : 방침 수립 중 -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내부 전문가 인적자원 구성 및 운영' 방침 수립 완료 - 내부 전문가 합동 해빙기 점검 완료 - 외부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중 ㅇ 향후계획 : 외부 민간전문가 인적자원 구축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일반 이용시민의 관점에서 안전위험 요소를 적기에 해소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	ㅇ 추진현황 : 43% 진행 ㅇ 추진내용 : 방침 수립 완료 - '시민참여 안전모니터 및 안전신고센터 운영' 방침수립 완료('15.1.28) - 시민안전신고센터 개설('15.2.6) - 시민안전 모니터위원 위촉 · 인원 : 47명 · 일시 : '15.2.10 - 사업장별 안전모니터링 활동 중 ㅇ 향후계획 : 안전모니터링 지속
재난관리 '평가제도 도입 및 매뉴얼 고도화'	재난관리 평가제도 시행을 통한 실제 위기상황에서 실행 가능토록 하며 사업장별 행동매뉴얼의 지속적인 보완, 평가, 협의, 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처능력 향상	-	ㅇ 추진현황 : 25% 진행 ㅇ 추진내용 - 재난관리평가제도 시행 알림(대상부서) · 일시 : '15.2.6 - 사업장별 모의훈련 일정 요청(대상부서) · 일시 : '15.3.31 ㅇ 향후계획 - 매뉴얼 평가 및 모의훈련 참관 준비
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예측시스템 도입'	시민 이용 시설에 대한 LCC분석 및 보수·보강 우선 순위 선정하여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하며, 시설 기능을 향상하고 안전 사고 예방	270	ㅇ 추진현황 : 20% 진행 -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개선사항 검토 및 기능분류 - 시설물 안전관리 예측시스템 구축 방침 수립완료 · 내용 : 시설물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및 보수 · 보강 우선 순위 선정 - 일상감사 완료 ㅇ 향후계획 - 서울시 심의 의뢰 진행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추 진 현 황 및 향 후 계 획
직원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구축'	전직원 건강상태 및 주요질병 등 관리·예방의 효율화와 체계적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전 예방적 직원 맞춤형 건강관리 추진	-	∘ 추진현황 : 30% 진행 - 건강검진 예약시스템 벤치마킹 실시 · 일시 : '15.1.6(화) · 대상 : 서울메트로(안전방재처) - 건강검진 예약시스템 구축 ※ 기획조정실 시스템 개발 협조요청('15.1.7) - 2014년 건강검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일 시 : '15.1.15 ~ 1.20 · 참여자 : 283명(전자결재 온라인 설문) · 결 과 : 만족도 점수 평균 86.6점(만족) ※ '15년 건강검진 계획 수립시 참고 활용 - 2015년 직원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15.2.4) - 2015년 직원 건강검진 기관선정 추진(3월) · 검진기관 제안접수 → 공개설명회 및 현장실사 평가 → 검진기관 선정완료 ∘ 향후계획 - 2015년 직원 건강검진 계획 수립 및 시행(4월)